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정보화 선도사업의 거점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·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749호, 2019. 12. 10. 공포, '20. 6. 11. 시행)됨에 따라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고, 과기정통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및 해당 지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, 시·도지사가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조성·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의 주요 절차를 규정함(안 제19조의2 신설)

나.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·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‘웹사이트’, ‘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

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’, ‘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, 정보 제공, 상품 주문·결제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’로 규정함(안 제31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고,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거점지구의 지정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(이하 “거점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점지구로 지정할 지역이 속한 시·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
2.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(이하 “정보화 선도사업”이라 한다) 추진 및 확산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적합성
3.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·산업 등의 현황
4. 그 밖에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

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1. 거점지구 지정 요청 대상지역

2. 거점지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

3.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

4. 시·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·인력 등의 세부 사항

5.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, 지정 내용,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9조의3(중전의 제19조의2)제1항 중 “법 제23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23조의4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3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23조의4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3조제3항”을 “법 제23조의4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4(중전의 제19조의3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3조의3제2항”을 각각 “법 제23조의4제2항”으로 한다.
제19조의5(중전의 제19조의4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3조의3제3항”을 “법 제23조의4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선·무선 정보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웹 사이트
2.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3.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, 정보 제공, 상품 주문·결제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

제31조의 본문 및 각 호의 내용은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선·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접근성 실태조사
2.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
3.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
4.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2(거점지구의 지정 등)</u> <u>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직접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</u> <u>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(이하</u> <u>“거점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하거</u> <u>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</u> <u>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</u> <u>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</u> <u>다)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</u> <u>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</u> <u>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학</u> <u>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</u> <u>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</u> <u>거점지구로 지정할 지역이 속한</u> <u>시·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</u> <u>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</u> <u>거점지구 조성계획</u> <u>2.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</u> <u>정보화 선도사업(이하 “정보</u> <u>화 선도사업”이라 한다) 추진</u>

및 확산에 대한 해당 지역의
적합성

3.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
의 경제·산업 등의 현황

4. 그 밖에 정보화 선도사업의
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
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
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
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상
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
시·특별자치시·도지사·특별
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
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
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1. 거점지구 지정 요청 대상지
역

2. 거점지구에서 추진하고자 하
는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

3.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및
기대효과

제19조의2(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)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(이하 “데이터센터”라 한다)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.

② (생략)

③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4. 시·도지사가 거점지구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·인력 등의 세부사항

5.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 목적, 지정 내용, 지정 대상 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19조의3(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) ① 법 제23조의4제1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23조의4제2항-----

-----.

1. ~ 7. (생략)

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제19조의3(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제19조의4(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)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제31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
<신설>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23조의4제3항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4(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) ① 법 제23조의4제2항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3조의4제2항-----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5(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) 법 제23조의4제3항-----

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
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
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선·무선 정보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웹 사이트
2.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3.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, 정보 제공, 상품 주문·결제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항의 유선·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접근성 실태조사
2.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
3.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
4.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어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

2.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
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어에 대한 접근성 표준화 및
기술개발 지원
3.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
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
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
교육 및 컨설팅
4. 그 밖에 웹사이트와 이동통신
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
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
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151 (044) 202 - 6275